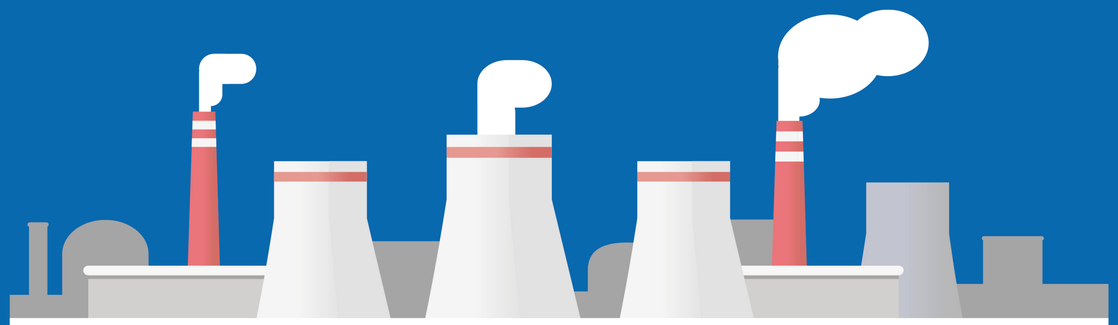

대기배출원조사 FAQ

자주하는 질문

Q1 |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대기 환경정책 수립·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장 기본부과금 산정 등 유관기관의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Q2 | 대기배출원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제9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 소속의 담당자가 경중을 판단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Q3 | 4·5종 대기 사업장의 경우도 SE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SEMS에 입력" 또는 "지자체·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 중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주소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6 백천빌딩 4~6층
대표번호 043-279-4500 **홈페이지** https://www.air.go.kr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

대기배출원조사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련 시설현황, 운전사항,
자가측정 정보 등 약 150여개 항목을 수집 하는 조사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조사 대상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에 포함

1~3종 사업장	약 4,500개
4~5종 사업장	약 55,000개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환경기술인이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의 일반현황, 시설정보,
자가측정결과,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조사

기록보존

주체 대기배출사업장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초자료 등록

사업장 현황	시설 현황	가동 시간
운전 사항	자가측정 사항	사용량

1~3종 대기배출원조사 절차

주체 정부 및 지자체

입력 자료 검증

- **1차검증** 사업장에서 입력 이후 누락된 값을 검증 프로그램으로 확인
- **2차검증** 전문 상담가를 통한오류값 재수정
- **3차검증** 연료사용량, 소각량 등과 같은 활동도 값을 통계로 검토

→ **배출원조사 자료확정** → **자료제공**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4, 5종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직접 제출

4,5종 대기배출원 조사절차

지자체	사업장목록, 인허가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조사대상사업장	사업장 운영현황(가동시간, 연료사용량 등)
대기배출원조사표	2022. 1. 1. ~12. 31. 사용한 기록을 작성(운영기록부 참조)

⇄ 환경부 미세먼지정보센터 **수집자료 전산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이란?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

사업장

사업장 현황정보	방지시설 운전사항
환경 기술인정보	시설 보수사항
시설현황	자가측정 배출량 정보
배출시설 가동시간	연료사용량등 활동도정보

자료 등록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대기 1~3종 사업장	**등록의무대상**
대기 4·5종 사업장	**등록선택대상**

-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자료 기록·보존
- 1~5종 대기배출원조사 수행
- 지자체 관할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 기본 부과금 제출, 배출량 조회 등)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보 관리**

지자체 담당자

- 대상사업장 관리
- 사업장 등록정보조회 (지도점검)
- 사업장 정보 통계조회